

<p>○ 주요 수송역 인력 증원 배치 : '99.9.22(수), 25(토), 26(일) /3일간 -서울역 등 주요 5개 역, 역당 1일 평균 12명씩 증원 배치</p> <p>□ 安全運行 對策</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동차 기동검수원 운용 강화('99.9.23~9.26/4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로5가역 등 10개 역에 92명 배치</li> <li>-본선운행 전동차 장애발생시 즉시 출동, 응급조치</li> </ul> </li> <li>○ 간부급 열차첨승 및 안전운행 독려('99.9.26~9.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철교 5개소 4.6km, 고가 19.1km, 터널 등 (30개 반 60명)</li> </ul> </li> <li>○ 선로시설물 특별점검('99.9.13~9.27/15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반경 300m 미만 급곡선부, 분기부, 이음매부 등</li> <li>-3개 사무소, 19개 분소 46명 합동점검</li> </ul> </li> <li>○ 전기시설물 특별점검('99.9.13~9.27/15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급전선 적정높이 및 장력 조정장치, 에스컬레이터 등</li> <li>-3개 사무소, 26개 분소 110명 합동점검</li> </ul> </li> <li>○ 신호·통신설비 특별점검('99.9.13~9.27/15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분기부 및 전철기, 통신장비, 케이트 등 AFC장비</li> <li>-5개 사무소, 25개 분소 60명 합동점검</li> </ul> </li> <li>○ 안전실태 확인점검('99.9.21~9.26/6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혼잡역, 차량·승무사무소 등의 시설물 안전상태(3명×2개 반)</li> </ul> </li> <li>○ 안전종합상황실 운영(24시간 전일제 - 2명 상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각종 사고, 주요상황 등 파악 및 보고</li> </ul> </li> </ul> <p>□ 紀綱確立 및 警戒強化</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무철저 등 복무기강 확립</li> <li>○ 취약지역 순찰 등 주요시설 경계강화</li> <li>○ 비상연락망 정비 등 긴급 대응태세 확립</li> </ul>	<p>'99.8.14(토) 16:23 1호선 청량리역 상선 승강장 중간지점 하부에 설치된 케이블에서 화재가 발생되어 전원공급 중단으로 1시간 동안 열차운행이 중단되었는데 피해 및 조치사항과 피해액, 화재원인, 향후대책은?</p> <p>(答 辯)</p> <p>□ 금번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 화재사고의 경위 및 조치사항은 '99.8.14(토) 16:18경 승강장에 정차중인 구로행 제659열차 차장 및 승강장에서 근무중인 역무원이 최초 연기 발생을 목격, 119에 신고하였고, 16:27 동대문 소방서 소방차(23대)가 출동하였으며, 16:42 화재가 진압되었으나, 17:40 신호설비 제어용케이블을 소손으로 인하여 열차 자동시스템에 의하지 못하고 수신호로 열차운행 재개가 이루어졌습니다.</p> <p>□ 화재원인은 발화원인과 관계 있는 증거물을 수집하여 과전류, 절연파괴 등 자체 요인인지 담배불, 쥐에 의한 피해 등 외적 요인인지를 정확히 조사하기 위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하였으므로 그 결과가 통보되면 화재원인이 밝혀질 것으로 사료됩니다.</p> <p>□ 피해액은 신호케이블 소손 16가닥 240m, 전력케이블 소손 2가닥 123m 등 총 6백여만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p> <p>□ 향후대책으로는 1호선 신호케이블을 8월 31일까지 일제 점검하였고, 소손된 케이블을 10월 31일 한 전면 교체하겠습니다며, 장기 계획으로서 1호선 신호설비에 대하여 2000년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하겠습니다.</p> <p>(質疑要旨)</p> <p>지난 7월 중에 노동조합이 역구내에서 불법집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데 노사협력처에서 불법이라고 통보한 서류와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p> <p>(答 辯)</p> <p>□ 노조가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1일까지 10일간 지하철 14개 사에서 공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상품판매를 한 바 있었습니다.</p> <p>□ 이에 대해서 공사는 7월 21일 노조에 무단상품 판매계획을 취소하고 만약 강행시는 법적 모든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하였고 다시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다며 7월 29일 노조</p>
<p>書面答辯書</p> <p>○尹故亨委員 (質疑要旨)</p>	

24 (第115回-交通第2次)

<p>에 동일 취지의 경고문서를 보낸 바 있습니다.</p> <p>□ 공사 직원들을 동원하여 물리적 저지를 하기도 하였으나 노조는 8월 1일까지 무단으로 상품판매를 하였습니다.</p> <p>□ 그런데 노조는 9월 11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또다시 지하철 역사에서 무단으로 상품을 판매하려는 계획에 대하여</p> <p>□ 공사는 철도법에 의한 역사 내 물품판매 금지 위반처벌에 근거하여 형사 고소고발 조치하며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수입금에 대해서는 민사상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9월 6일 노조에 경고 조치한 바 있습니다.</p> <p>□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계획에 따라 지하철 역사에서 불법상품판매를 감행하여 공익근무요원, 청원경찰 및 본사 직원이 상품판매 행위를 단속하여 일부 철수하고 나머지도 제대로 판매가 되지 않았습니다.</p> <p>공사는 향후 다시 승객들이나 상인들이 불편해 하거나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p> <p><b>○ 金喜甲委員 (質疑要旨)</b></p> <p>2/4분기 심사분석과 관련하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수처 소관 7개 사업 중 운수사업수익이 목표대비해서 상당히 미달되었는데 미달된 주요인이 과업으로 인한 운행감축 24억 원, '98년 연락운임 64억 원 미정산 등이 있는데 '98년 연락운임 64억 원 미정산의 세부내역은?</li> <li>○ 부대사업수익 중 목표대비 45.8%에 불과한 공중통신유치시설사용료가 있음.</li> </ul> <p>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기되었습니다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의결과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임대업체가 납입금을 납입하지 않아서 계획에 약 34억 정도 미달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과 별도 방안이 있는 것인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고수입과 편의시설 임대료가 연간 대비해서 일부 부족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li> </ul> <p><b>(答 緝)</b></p> <p>□ '98년 연락운임 64억 원 미정산의 세부내역에 대하여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권 도시철도는 지하철공사와 철도청, 도시철도공사가 직통 또는 연계운행을 통해 관할노선을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연락운송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한 연락운송 수입은 운송기관간 연락운임정산 협약을 체결하고 그 기준에 의하여 각 기관별 정산하고 있습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8년 미정산금 64억 원은 현재 정산기준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전체하고 '97년 분 정산금액을 기준으로 수송변동률과 운임인상률을 감안하여 산출하였을 때 지하철공사가 철도청에서 23억 원, 도시철도공사에서 41억 원을 받을 것으로 추정한 금액입니다.</li> <li>○ '98년 정산이 지연된 사유는 '97년분 청산이 도시철도공사의 자금사정으로 지연되어 '99.7.13 완료됨으로써 순연되었으며, 지하철공사에서는 2차('99.3.9, '99.6.16)에 걸쳐 '98년분의 정산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도시철도공사에서 같은 서울시 산하 공사인 지하철공사와의 정산 생략을 제기하여 지연되고 있습니다.</li> <li>○ 이에 대해 공사에서는 별도 법인인 양 공사간의 정산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서울시에서도 '99년까지는 기존 정산방법으로 정산하되 이용경로, 환승역 가중치 등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관계기관간 협의보완하고 협의가 곤란할 경우 시가 결정키로 함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추진 할 계획입니다.</li> </ul> <p>□ 공중통신유치시설사용료 미납으로 계획에 약 34억 정도 미달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과 별도방안에 대하여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하철 내 이동통신서비스는 SK텔레콤(주)과 쭈신세기통신 및 한국전파기지국관리(주)의 설치요청과 정보통신부의 협조 요청으로 설치승인하였으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료 산정을 위한 원가조사 용역을 국가공인 원가조사기관인 단국대학교 부설 산업연구소에 서울지하철공사와 SK텔레콤(주)이 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조건으로 실시하여 동 연구소의 원가조사 보고서를 기초로 단가를 적용하여</li> <li>- 쭈신세기통신 외 2개 사와 지하철 시설물 사용에 관한 쌍무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li> </ul> </li> <li>○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체결후 이동통신사업자들은 '98.2/4분기까지 사용료를 정상 납부하였으나, 쭈신세기통신 외 2개 사는 2회에 걸쳐 공정</li> </ul> </li> </ul>
--	--

<p>거래위원회에 불공정계약이라며 일방적으로 신고하고 사용료 납부를 중단하였습니다.</p> <p>○ 공정거래위원회는 1차 신고사항에 대해 '99.1.25' 의결하였는데 - 점용료과다 여부 등 5건은 우리 공사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각각 심의 종료 및 기각 처리되었으며 계약금액 조정 외 1건은 시정명령으로 계약상대방과 협의 지하철 시설물 사용에 관한 계약을 변경조치하였습니다.</p> <p>2차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중에 있습니다.</p> <p>○ 정보통신부 중재 및 협의 - 정보통신부에서는 '99.3월부터 계약당사자 간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원만히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4차례의 연석회의 및 협의를 거쳐 중재 합의(안)을 마련 이의 수용을 요청하였습니다. - 주요 중재사항은 이동통신사업자와 체결된 계약 만료기간을 '99.12.31'까지로 단축</p>	<p>하고 새로운 사용료에 의한 재계약을 추진하자는 내용이었는데 - 우리 공사에서는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 등을 거쳐 현 계약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계약 불이행 통신사업자에 대해 법적 조치방안을 이사회의결을 거친 후 '99.7.30' SK텔레콤 등 2개 업체를 상대로 가압류 및 청구소송을 추진중에</p> <p>○ 정보통신부에서 재수정된 합의서(안)의 동의를 요청하여 '99.9.21' 우리 공사에서 이를 수용함으로써 미납사용료를 '99.9.21' 한국전파기지국관리㈜ 9,150백만원, 9.22 ㈜신세기통신 48백만원, 9.27일 SK텔레콤㈜ 5,676백만원 총 14,874백만원을 전액 정수 조치하였습니다.</p> <p>□ 광고수익과 편의시설임대료가 연간 대비하여 일부 부족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는 ○ 서울지하철공사(1~4호선) 역 구내에서 부대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광고와 편의시설 '99. 6월말까지의 수입실적이 다음과 같습니다.</p>				
(단위 : 백만원, 부가세 제외)					

구 분	연간목표	'99. 6월말 기준				비 고
		목 표	추진실적	증(△)감	대비(%)	
총 계	22,431	10,463	10,059	△ 404	96.14	
광고사업	18,336	8,469	8,146	△ 323	96.19	
편의시설	4,095	1,994	1,913	△ 81	95.94	

- 목표대비 부대사업 수입실적이 404백만원이 부족한 사유는  
- 광고수입은 2호선 전동차 외부광고의 일 반경쟁 추진시 유찰에 따른 계약공백(2개월) 발생으로 345백만원, 노반조명광고, 신문판매대상단광고, 안전홍보스티커 광고의 신규계약시 낙찰가 하락으로 77백만원, 접외현금입출금기광고, 간이매점 상단광고 중단으로 20백만원, 지하철홍보판광고, 전동차시각안내판광고는 광고 물량 감소로 29백만원 등 471백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전동차 내 노선도광고 58백만원, 방향보조안내판 유상표기 50백만원, 승차권발매기상단광고 40백만원 등
- 으로 148백만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323백만원의 수입이 미달하였으며,  
- 편의시설의 경우에는 경기불황에 따른 이용시민의 소비심리 위축, 역사 냉방화 ('99년 3개 역, 전체 24개 역) 등에 따른 냉음료 판매부진에 기인하여 116백만원의 수입이 감소하였으나, 도서판매대에서 28백만원, 복권판매대에서 7백만원의 수입증가 등으로 편의시설에서는 81백만원의 수입이 미달하였습니다.
- 공사에서는 수입 목표달성을 위하여 시설물의 적정 장소로의 이전, 신규사업 개발, 계약해지된 시설물의 일반경쟁 추진 등을 통하여 연말에는 수입목표 달성을 최선을

26 (第115回 -交通第2次)

다 하겠습니다.

< 별첨 >

□ 이동통신사업자 계약기간

○ 주신세기통신 : '97.8.5~2000.8.4(3년)

○ SK텔레콤(주) : '97.8.28~2000.8.27(3년)

○ 한국전파기지국관리(주) :

'97.11.19~2000.11.18(3년)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사항

○ 1차 신고사항

- 신고한 점용료 과다여부

- 사용료 산정용역기관 선정과정

- 계약기간 선정기간(3년) 설정

- 통신사업자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보수책임

- 계약의 해제·해지 및 시설 철거비용

○ 2차 신고사항

- 점용료 과다 및 점용료 산정기관 지정과 관련한 사항

- 사용료 발생시기를 도면승인일 적용 사항

- 사업자가 설치한 중계설비, 케이블, 공중선 등의 사용을 제3의 사업자와 공유시 승인을 득하는 사항

- 통신사업자시설물을 우리공사가 소화활동 설비, 치안, 재방송설비, 구난관련 설비 등의 시설을 위해 이용시 사업자가 사용료를 청구할 수 없는 사항

□ 정보통신부 수정 중재 합의(안) 내용

- 기 체결된 계약서의 계약기간을 준수하고

- 재계약에 적용할 사용료 산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등록한 "원가조사용역기관"을 우리 공사가 선정하고

- 재계약 체결, 사용료 산정 기준 마련 등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 연체된 사용료(연체료 포함)를 합의서 서명 후 5근무일 이내에 전액납부

□ 통신사업자 사용료 및 연체료 현황

(단위 : 원)

사업자명	사용료	연체료	계
한국전파기지국관리(주)	7,723,707,094	1,425,923,481	9,149,630,575
SK 텔레콤(주)	4,914,847,905	761,539,147	5,676,387,052
주신세기통신	-	48,776,068	48,776,068
계	12,638,554,999	2,236,238,696	14,874,793,695